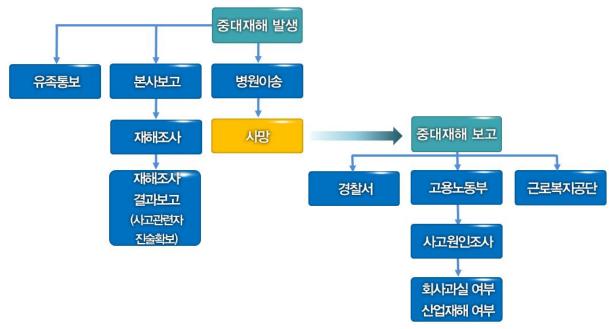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C - 86 - 2018

- (가)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
- (나)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
- (다)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
- (2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
- (나)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,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본사에 보고
- (다)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,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
- (3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, 조치 및 전망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·팩스,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또한, 중대재해 발생시 일반적인 업무 흐름도(예)는 다음과 같다.



<그림 1>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 흐름도(예)